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00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정필모·윤영찬·박주민

홍정민 · 김종민 · 박홍근

한준호 • 이형석 • 이원욱

민형배 · 맹성규 · 이용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 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,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.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간에 변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.

이에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

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제5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수립하려는"을 "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수립·시행"을 "수립·시행·변경"으로 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
· 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
	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
	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
	<u></u> 할 수 있다.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<u> </u>
기본계획을 <u>수립하려는</u> 경우에	수립하거나 변경하
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	<u> 려는</u>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	
후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	
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	
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	
한다. <단서 신설>	<u>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
	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
	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
	거치지 아니한다.
<u>④</u> · <u>⑤</u> (생 략)	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
<u>⑥</u> 그 밖에 기본계획의 <u>수립·</u>	<u>⑦</u> <u>수립</u>
<u>시행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<u>·시행·변경</u>
령령으로 정한다.	<u>.</u>